

업 무 협 약 서

함양군, 함양군의회와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(이하 '행복중심생협')는 함양군 농축특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에 대한 유통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1. 본 협약은 함양군, 행복중심생협, 함양군의회와 업무협약(MOU)을 통한 상호 협력으로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함양군, 함양군의회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제반 사항과 준비에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한다.
3. 행복중심생협은 함양군 농축특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해 신의 성실에 입각해 각종 정보의 제공 등 협력하고, 함양군 농축특산물 및 농산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4.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5. 본 협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, 각 기관은 협약을 근거로 어떠한 법률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8월 31일



함양군의회

의 장 박 용 윤



함양군

군 수 진 병 영



회 장 안 인 숙